

감정평가서

건명	황수진 소유물건 (2025타경31925)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조선동
감정서번호	251004-207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양해창

(인)

감정평가액	육억사천만원정 (₩640,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조선동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황수진 (2025타경31925)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11.01	2025.10.28 ~ 2025.11.01	2025.11.02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2개호	구분건물	2개호	-	640,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64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4-2 파크뷰 타워	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7층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공원로 69			지1층	1,130.65			
				지1층	95.84			
				1층	789.05			
				1층	171.84			
				2층	827.17			
				2층	133.72			
				3층	622.5			
				3층	133.72			
				4층	622.5			
				4층	133.72			
				5층	622.5			
				5층	133.72			
				6층	622.5			
				6층	133.72			
				7층	504.86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가	(전유부분 의 건물의 표시)			7층 (내)	125.14		320,000,000	비준가격 (공용부분: 59.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4층 4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24.44	124.44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4-2	대	일반상업지역	1,395.4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37.6579			
	대지권의 비율	1.			----- 1,395.4	37.6579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28,000,000 192,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나	(전유부분 의 건물의 표시)			(내)				
				4층 4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24.44	124.44	320,000,000	비준가격 (공용부분: 59.15㎡)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4-2	대	중심상업지역	1,395.4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37.6579			
	대지권의 비율	1.			----- 1,395.4	37.6579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28,000,000 192,000,000	
	합 계						₩640,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인 "파크뷰타워 4층 내 (가)401호(전용면적: 124.44㎡), (나)402호(전용면적: 124.44㎡)"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소재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중앙부에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상가지대로서, 소매점, 음식점, 병원 등의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 미개발단지, 주변 아파트단지,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동(파크뷰타워)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도보로 약 3~4분 거리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중 4층 내 401호, 402호 집합상가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18. 08. 06."

외벽: 화강석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시멘트탈위 페인팅 등 마감

바닥: 콘크리트위 인조잔디 등 마감

창호: 페어글라스창호

4. 이용상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401호[기호(가)], 402호[기호(나)] 공히 집합상가로서, 일체의 근린생활시설(스노우파인 축구클럽)로 이용되고 있음.

5. 설비내역

공동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는 주변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다각형의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상업용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 남측으로 약 25~28m, 동측으로 약 20m, 북측으로 약 15m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401호, 402호 공히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은 "일반상업지역(2013-11-20),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확인), 대로3류(폭 25m~30m)(2013-12-20)(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3-12-20)(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3-1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2013-12-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5-12-07)(테크노폴리스지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에 해당함.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대상물건의 종류 및 평가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소재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중앙부에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파크뷰타워 4층 401호, 402호(집합상가)”로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3계)」의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 의뢰목록상 부동산 물건(요약내용)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4-2 파크뷰타워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공원로 69

4층 401호 [기호(가)]

건물(전유부분): 124.44㎡

대(소유권 대지권): 1,395.4㎡ × 37.6579/1,395.4

4층 402호 [기호(나)]

건물(전유부분): 124.44㎡

대(소유권 대지권): 1,395.4㎡ × 37.6579/1,395.4

2.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였음.

3. 기준시점 및 실시조사 기간

1)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 11. 01.을 기준으로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실지조사는 2025. 10. 28. ~ 10. 31.에 수행하여 귀 의뢰사항 및 공부에 의거 대상물건을 확인하고, 2025. 11. 01.에 가격조사를 완료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에 정의하고 있으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2) 감정평가 조건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본건 구분건물(상가)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거하였음.
- 본건 구분건물(상가) 2개호[401호, 402호]는 현황 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위치가 확인되고, 또한 경계벽을 설치하여 호별 구분이 가능하고, 각 호별로 복도 통로가 확보되어 있어 각각의 호별로 접근이 가능한바, 의뢰목록(공부)상에 의거 호별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였음.
-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또한 구분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하여 일반적으로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대구지방법원의 평가명령서상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및 토지의 배분가액을 표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바, 평가목적에 따른 경매진행시 참고를 위해 토지와 건물가격을 지역적 특성, 대상부동산의 성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분하여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방법 및 적용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 관련 규정 검토

관련규정	주요 내용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또는 부분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는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대상물건별로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시산가액 조정을 통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감정평가방법의 세부 내용

평가방법	내용
공시지가기준법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평가방법	세부 내용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3.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 대상물건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평가하되, 시장의 거래상황 및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시산가액과의 비교 및 그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 다만, 대상물건의 최대한 객관적 가격산정을 위하여 시장성을 고려한 인근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참고가격 자료를 통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된 시산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대상물건의 개황

1. 대상물건 소재 건물동 개요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4-2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공원로 69]		
건물명	파크뷰타워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 지상 7층		
대지면적	1,395.4㎡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면적	975.38㎡	연면적	6,803.15㎡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호수/세대수	-
높이	33.32m	사용승인일	2018. 08. 06.

2. 대상 구분건물 개요

기호	층/호수	건물면적(㎡)			소유권대지권 (㎡)	용도
		전용	공용	전체		
가	4층/401호	124.44	59.15	183.59	37.6579	집합상가
나	4층/402호	124.44	59.15	183.59	37.6579	집합상가

3. 설비현황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난방설비	냉방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기타설비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대상물건의 감정평가

[1] 대상물건의 시산가액 산정

1. 감정평가방법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함.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비교 × 면적비교 = 대상물건 시산가액

2. 거래사례 선정

1)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사례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면적(㎡)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대지권(㎡)	사용승인	전유면적당 단가(원/㎡)
#1	유가읍 봉리 61*-*	***타워	4층/ ○○○호	124.44	2020.12.18	360,000,000
				37.6579	2018.08.06	2,892,960
#2	유가읍 봉리 61*-*	***타워	7층/ ○○○호	149.5	2020.12.11	400,000,000
				45.2415	2018.08.06	2,675,585
#3	유가읍 봉리 61*-*	***타워	6층/ ○○○호	117.64	2021.01.07	300,000,000
				35.6001	2018.08.06	2,550,15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사례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면적(㎡)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대지권(㎡)	사용승인	전유면적당 단가(원/㎡)
#4	유가읍 봉리 6**	***밸리	4층/ ○○○호	173.23	2024.10.22	439,000,000
				53.3892	2016.06.07	2,534,203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2) 비교사례 선정

사례물건 중에 본건 사례가 있으나 시점 차이가 있고 최대한 객관적이 평가를 위해 참고적으로만 검토하였으며, 비교사례는 비교적 최근의 사례이고 대상물건과 동일한 상권에 위치하여 가치형성요인에 있어 상관관계가 높은 사례 #4를 선정하였음.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비교 거래사례는 거래시점 당시 시장 상황 및 일반적인 시장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바, 별도의 사정보정할 요인은 없음. (1.000)

4. 시점수정

1) 기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수익률 정보 중 시도지역 상관별 집합상가 자본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되, 대상물건이 소재한 권역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현풍테크노폴리스 상권의 자본수익률(분기)”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음.

2) 자본수익률(대구광역시 현풍테크노폴리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1년	0.01%	0.92%	0.55%	0.80%
2022년	0.77%	0.74%	0.36%	-0.25%
2023년	-0.75%	-0.74%	-0.51%	-0.28%
2024년	-0.38%	-0.42%	-0.35%	-0.26%
2025년	-0.36%	-0.32%	-0.35%	-

3) 시점수정치 산정

기 간	시점수정치	비 고
2024. 10. 22 ~ 2025. 11. 01	0.98655 (-1.345%)	$(1-0.0026 \times 71/92) \times (1-0.0036) \times$ $(1-0.0032) \times (1-0.0035) \times (1-0.0035 \times 32/92)$

※ 기준시점 현재 2025년 4/4분기 집합상가 자본수익률이 고시되지 않아 2025년 3/4분기 집합상가 자본수익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5. 가치형성요인 비교

1)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폭, 구조 등)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조 건	항 목
건물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개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기호	비교 사례	비교 사례 기준	가치형성요인 비교				격차율 누계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가	#4	1.00	1.00	1.02	1.01	1.00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요인: 대상물건과 사례물건은 동일 도로변에 마주하고 있고 동일 상권에 위치하여 외부요인 대등함. ■ 건물요인: 건물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한 건물상태에서 다소 우세함. ■ 개별요인: 층별 효용에서 다소 열세이나 전유부 면적에서 우세한바 전체 개별요인 다소 우세함. ■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등함. 				
나	#4	1.00	1.00	1.02	1.01	1.00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요인: 대상물건과 사례물건은 동일 도로변에 마주하고 있고 동일 상권에 위치하여 외부요인 대등함. ■ 건물요인: 건물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한 건물상태에서 다소 우세함. ■ 개별요인: 층별 효용에서 다소 열세이나 전유부 면적에서 우세한바 전체 개별요인 다소 우세함. ■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거래사례 가격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대상/사례)	산정금액
가	#4	439,000,000	1.000	0.98655	1.030	124.44 173.23	320,448,131
나	#4	439,000,000	1.000	0.98655	1.030	124.44 173.23	320,448,131

[2] 가격 참고 자료

1. 유사 물건의 가격수준

시장의 거래사례 검토 및 시장탐문 등에 의거할 때 유사 구분상가의 가격수준은 층별 및 위치별 효용성, 면적 등의 가치형성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파악됨.

- 3층~5층 구분상가: (전용면적당) 2,100,000 ~ 2,600,000/㎡ 내외 수준

2. 유사물건의 감정평가사례

번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금액 (원/전유면적)
				대지권(㎡)		사용승인	
1	유가읍 봉리 61*-*	***타워	*층/○○○호	149.5	경매	24.04.12	360,000,000 (2,408,027/㎡)
				45.2415		18.08.06	

[3] 감정평가액 결정

1. 결정의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시장탐문에 의한 일반적인 가격수준, 감정평가사례 및 집합상가의 가격동향, 수요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액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2.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층/호수	건물면적(㎡)			소유권대지권(㎡)	결정금액
		전용	공용	전체		
가	4층/401호	124.44	59.15	183.59	37.6579	320,000,000
나	4층/402호	124.44	59.15	183.59	37.6579	32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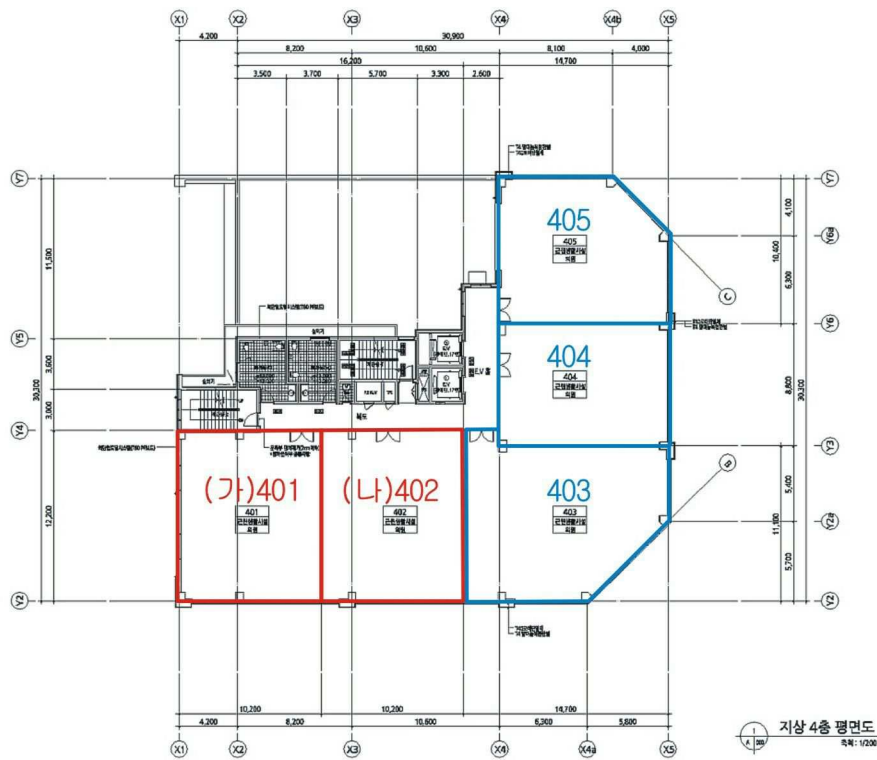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4-2 『파크뷰타워 4층 401호, 402호』

호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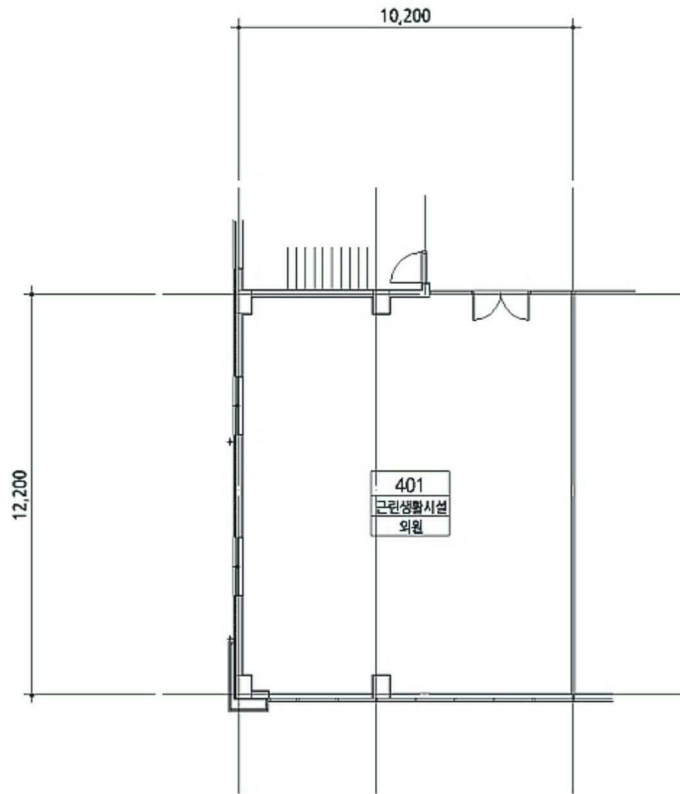
Free Scale



본 건
[파크뷰타워 4층 (가)401호, (나)402호]

건축물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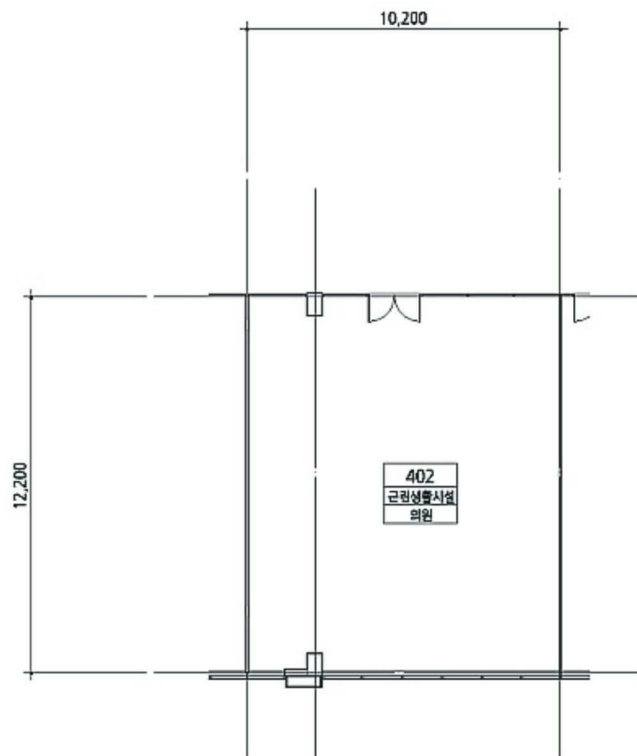
Free Scale



401호 평면도

건축물현황도

Free Scale



402호 평면도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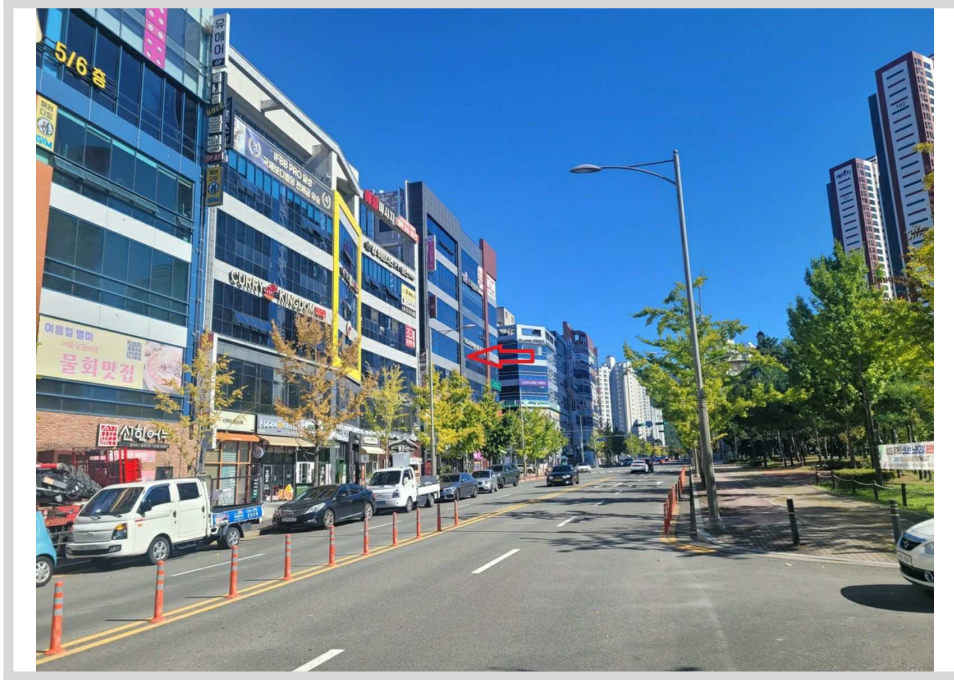


본건전경
(남측 주변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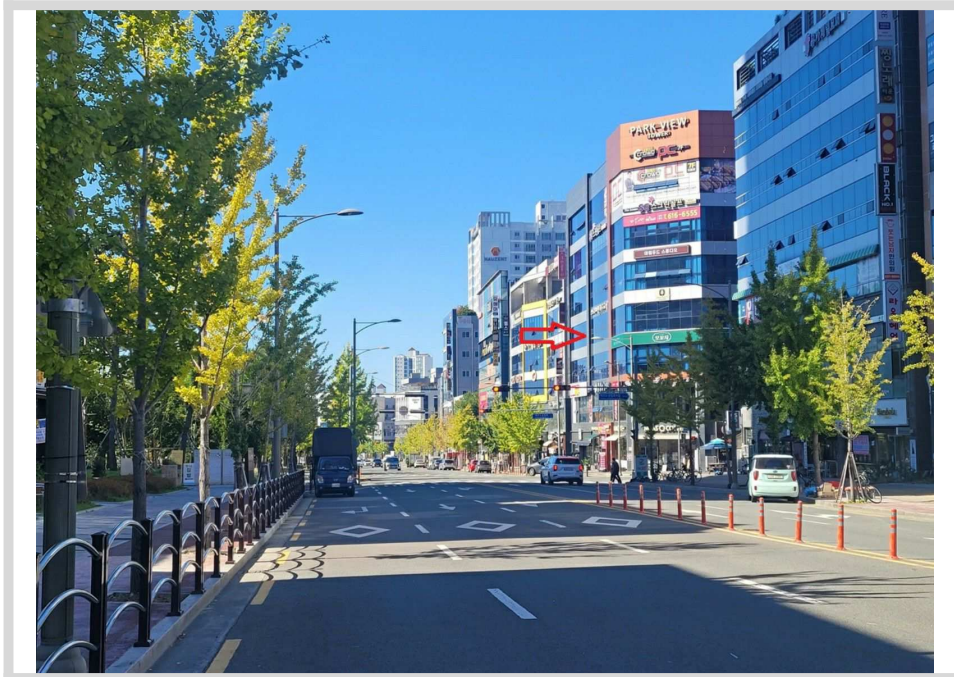


본건전경
(남동측 주변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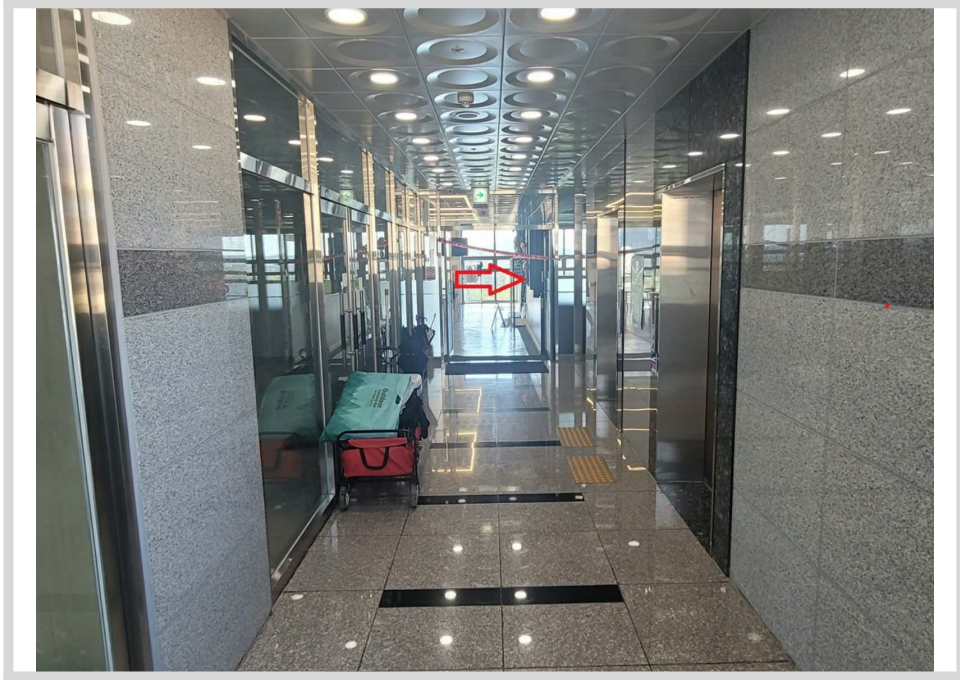


본건 및 주변전경
(남측 도로 서측 주변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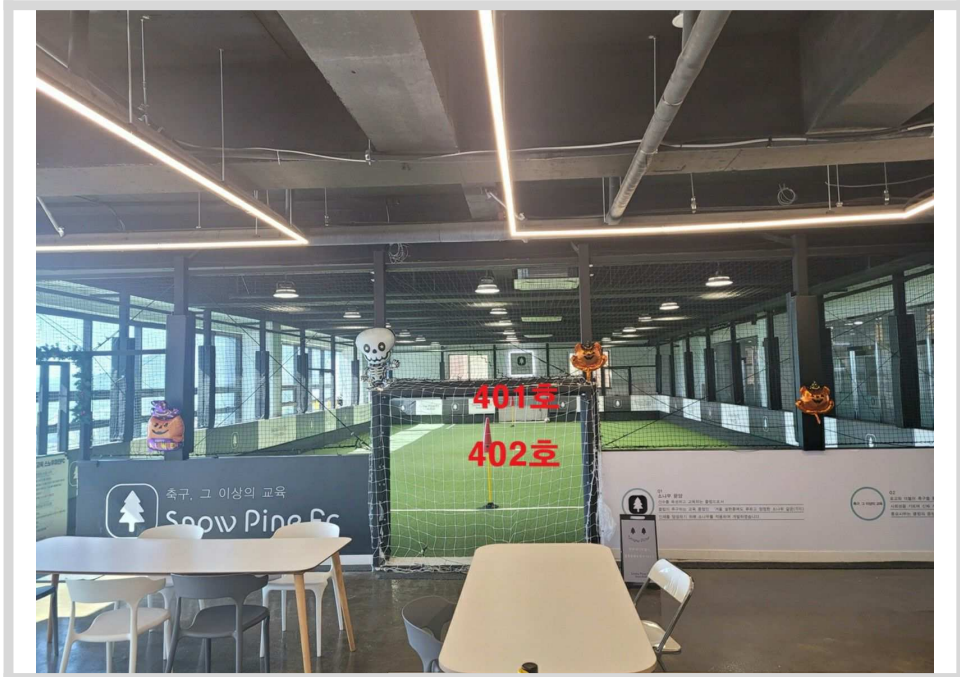


본건 및 주변전경
(남측 도로 동측 주변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건물 4층 내 본건 및 공용부분 전경



본건전경(동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본건 내부 전경(동측에서 촬영)



본건 및 복측 복도 전경
(동측에서 촬영)